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0727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316,10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1. 4. 27. '피고가 개발하여 중국 공장에 생산을 의뢰한 상품을 C가 수입하여 D에게 공급하고, D는 피고에 대한 여신관리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 E, F에게 2021. 6. 14. 50,000,000원을, 2021. 6. 18. 8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130,000,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2021. 6. 30.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스마일발판 외', 공급가액 106,651,000원, 세액 10,665,100원, 합계금액 117,316,1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 없이 발행된 것이었다.

마. D, E, F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약정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담보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이에 D, E, F은 변제할 원금과 이자 내지 약정 수익금을 142,500,000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이에 관한 서면을 요구하자 D, E, F은 14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금액확정공문, 이하 '이 사건 금액확정공문'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금액확정공문을 근거로 하여 2022. 6. 10. 주식회사 D,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08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12.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D는 2022. 6. 24.까지, E, F은 2022. 8. 26.까지 각 연 2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D는 2023. 2. 28.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발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7,31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보증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금액도 이 사건 대여금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이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발행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